

(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-참조2)

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
2013. 02. 19 (화) 10:00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전문위원 박세종

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 경위

가. 발 의 자 : 정용한 의원 등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 2718 호

다. 접 수 일 : 2013. 02. 12

라. 회 부 일 : 2013. 02. 18

2. 제안 이유

-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동시에 실시하게 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예산 편성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,
- 제2차 정례회의 과중한 의회일정을 감안,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 내용

- 제1차 정례회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개정(안 제3조제1호)
-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며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(안 제6조)

4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정용한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께서 2013. 2. 12 발의하여 2013. 2. 18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서 「성남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(7인 이상)의 의원 연서로 발의되어 발의요건과 형식요건 그리고 성립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4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는 의안입니다.
- 참조1(개정안에 따른 장·단점 비교표)과 참조2(시·군별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)를 참고하셔서 행정사무감사의 의의와 목적(참조3)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.

[참조 1]

□ 개정안에 따른 장·단점 비교표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감사기간	• 전년도 11월~당해 연도 10월	• 전년도 6월~당해 연도 5월
장 점	• 당해회계연도(1.1~12.31)재정 및 정책의 효율성 파악 용이 • 행정사무감사 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통한 업무 파악이 용이함	•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제고 • 업무의 분산으로 의정활동 효율성 제고
단 점	• 연도 말에 행정감사와 익년도 예산심사를 함에 따라 과중한 의사일정 편성으로 의정활동의 비효율성 초래	•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여 17개월의 업무를 감사하고 익년도에는 7개월의 감사를 실시하므로 개정취지에 불부합

[참조 2]

시·군별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

(%)

광역시 의회	경기도 시·군의회	서울시 구의회	부산시 구의회	인천시 구의회
1(세종시)/17 (5.8)	17/31 (54.8)	9/25 (36)	2/16 (12.5)	2/10 (20)

- 경기도 시·군의회중 제1차 정례회시 행감 시군현황
가평군, 과천시, 구리시, 군포시, 동두천시
시흥시, 안산시, 안성시, 양주시, 양평군
여주군, 오산시, 이천시, 파주시, 포천시
하남시, 화성시
- 서울시 구의회중 제1차 정례회시 행감 현황
강북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, 마포구
성동구, 성북구, 은평구, 중랑구
- 부산시 구의회중 제1차 정례회시 행감 현황
연제구, 기장군 ※사하구 : 제1,2차 정례회에서 실시
- 인천시 구의회중 제1차 정례회시 행감 현황
계양구, 강화군

[참조 3]

□ 행정사무감사의 의의¹⁾

지방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 심사 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상의 법부당사항을 조사 적발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능 뿐 아니라,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

□ 행정사무감사의 목적²⁾

- ▶ 정책결정이나 기존정책을 조사하여 개선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의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킴
- ▶ 한정된 자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자원의 비합리적인 사례를 시정시킴으로써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기여
- ▶ 주민으로부터 공공책임성이 부여되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합법성, 경제성, 효율성을 감사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
- ▶ 공직자의 비위와 부당행위를 방지 함

1) 지방의회 과정론 「박봉국」 박영사 2002

2)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사례 「최민수, 윤진호」 한국산업기술원지방자치연구소 2012

관 제 법 령 발 체 서

□ 지방자치법

제41조 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.

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 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39조 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.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.

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

제54조 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